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논의

1 현황

- 현재 주식 양도시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6%~4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또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0.08%~0.43%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소유주식의 지분율이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인 경우를 말함
 -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0.08%의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과세하고 있는바, 동일한 수준의 거래세를 적용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0.23%의 증권거래세율을 정하고 있음
 -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까지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 그 이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규정되어 있는데,⁴⁵⁹⁾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 것임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중립성 및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⁴⁶⁰⁾
 -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이면 25%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하도록 정하였음
 -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별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고, 동결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임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는 5천만원을,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는 250만원을 각 공제하도록 정하였음
- 그런데 정부는 2022. 6. 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

459)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46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설명 자료」, 2020. 6. 25. p.1

예하며,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이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2%로 0.03%p 인하하겠다고 밝혔음⁴⁶¹⁾

- 즉 현재와 같이 자산규모 기준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 과세대상을 현재보다 더욱 축소하는 것임(종목별 보유액 10억원 → 100억원)

2 향후 논의 사항

- 만약 정부의 발표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할 경우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 등 금융세제 체계가 유지될 것인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보완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금융세제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어 소액주주와의 수평적 형평성⁴⁶²⁾이 저해되는 등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이 제외되어 집합투자기구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금융상품에 한하여 과세하고 있어 비과세대상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등 투자결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 더불어 현행 법령상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부터 0%가 적용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될 경우 이를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

작성자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임재범 ☎ : 02-6788-4577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 : 044-215-4230

461)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16. p.19

462) 수평적 형평성이란 주식 양도차익 등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동등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과세원칙을 말함